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정 1971.11.16 개정 1974.10.21
개정 1976.10.28 개정 1978.08.01
개정 1980.10.24 개정 1981.05.20
개정 1982.12.31 개정 1987.03.31
전문개정 1988.09.15 개정 1989.12.29
전문개정 1991.05.01 개정 1992.12.28
개정 1994.01.01 개정 1996.01.01
개정 1998.03.11 개정 1998.11.11
개정 2002.09.05 전문개정 2004.04.13
전문개정 2008.07.31 개정 2010.12.23
개정 2016.12.06 개정 2017.11.30
개정 2021.12.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정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제가액(共濟價額) : 공제등록 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2.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 : 회원이 공제가액이하로 등록 신청한 금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3. 공제금(共濟金) : 공제등록물건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4. 공제회비(共濟會費) : 공제등록물건의 구조, 사용용도 및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제요율(共濟料率) :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한 요율 또는 계수를 말한다.
6. 재조달가액(再調達價額) : 공제등록물건과 동등한 것을 재취득 또는 재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정기등록·수시등록 : 공제등록일이 매년 1월1일부터인 경우를 정기등록이라 하며, 공제등록물건의 신축, 증축, 취득, 개축, 변경 등의 사유로 연도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를 수시등록이라 한다.
8. 손해액(損害額) :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공제등록물건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재조달 비용을 말한다.

9. 테러행위 :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포함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위해 범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특별담보(特別擔保) : 기본으로 보상하는 손해 외에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손해를 말한다.

제2장 공제등록 및 회비산정

제3조(공제등록의 대상) ①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건물

2. 시설물(집기비품/기계·설비/공·기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외에 회원이 신청하고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제4조(공제등록금액 책정) ①건물의 공제등록금액은 공제가액 이하로 회원이 신청한 금액 또는 공제회에서 권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고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6.>

②시설물의 공제등록금액은 취득가액, 감정가액 또는 공제등록 당시의 시가 중 공제가액 이하로 회원이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공제등록 및 변경) 회원은 신규등록 또는 공제등록물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제기간) ①정기등록의 공제기간은 매년 1월1일 0시부터 12월31일 24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12.6.>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0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회원이 종료일을 별도로 지정하면 그 일수만큼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아 단기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0.12.23.>

③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 갱신한다.<신설 2016.12.6.>

제7조(공제회비의 산정)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한다.

1. 건물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 용도별 공제계수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2. 시설물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 용도별 공제계수, 옥내·외 공제계수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3.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회비는 공제등록금액에 특별담보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제회비의 납부) ①정기등록 공제회비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등록 공제회비는 공제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등록 공제회비의 경우 1월말까지의 등록분은 3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12월중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비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시등록분 중 단기가입의 경우에는 공제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3.>

제9조(공제등록의 해지) ①회원은 공제기간 중 공제등록물건의 철거, 매각, 교환 등의 공제등록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을 해지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의 종기는 회원이 지정한 날로 하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는 환불한다. 다만, 회원이 해지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등록 해지신청이 공제회에 접수된 날을 공제기간의 종기로 한다.

제10조(공제등록의 소멸 및 무효) ①보상하는 손해 외의 원인으로 공제등록물건이 멸실하였을 경우 공제등록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는 환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등록은 무효이며, 공제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 공제등록 당시 해당 물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제등록금액이 공제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된 부분.

제11조(공제등록의 제한 등) ①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물건에 손해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공제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3장 공제금 지급

제12조(보상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11.30.>

1.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손해
 - 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나.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2. 풍·수·설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
 - 가. 태풍, 회오리바람, 집중호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에 따른 직접손해.
 - 나. 눈이 쌓이며 발생한 직접손해.
3.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 및 붕괴로 인한 손해
4.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

5. 구내에서 생긴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신설 2010.12.23.>

6.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신설 2017.11.30.>

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나.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 발생손해)

다. 붕괴, 파손 및 파문힘 등의 손해

라.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마. 지진해일(쓰나미) 등 그 밖에 수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바. 폭발 또는 파열(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로 인한 직접 손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외에 추가로 공제등록한 특별담보손해.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8조의 납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다만,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30.>

3.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위탁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생한 손해.

4. 공제등록물건의 사용 중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다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 및 붕괴의 손해는 제외한다.

5.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삭제 <2010.12.23.>

8. 공제등록물건의 발효,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다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9.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10. 풍재, 수재 및 설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온도변화에 의하여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12.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3.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건물에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14. 수도관, 물탱크, 수관, 수압기 등의 폭발·파열 및 내열기관,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인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해 생긴 손해. 다만,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신설 2010.12.23.>

15. 공제등록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한 손해<신설 2017.11.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제금신청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
2. 사고발생시 제14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때

제14조(손해발생시의 의무) 회원은 공제등록물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 손해의 경감 및 사고확산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공제등록물건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4. 사고현장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복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사실을 회원이 공제회에 입증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금의 신청) ①회원은 공제등록물건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공제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제 또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공제등록물건은 회원이 해당 보험사의 신청양식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소멸시효) 공제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신설 2016.12.6.>

제17조(공제금의 산정) ①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공제등록금액이 공제등록 1건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이상 일 경우, 손해액을 공제금으로 한다. 다만,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 보다 클 경우 재조달가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2.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 결과로 공제등록 1건의 손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미만으로 산출되면 지급공제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text{공제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등록금액}}{\text{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3. 공제등록 1건의 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등록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4.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공제등록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 규칙에 의하여 공제금을 산정한다.

②테러행위로 인한 공제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72시간내 중복되는 사고는 1건으로 한다.
2. 1건당 5천만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공제금을 지급한다.
3. 최고보상한도액은 50억원 이하로 한다.

③공제회는 손해액산출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④손해발생물건의 공제등록 내역이 확인내역과 상이한 경우 회원은 공제회에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공제회의 확인내역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⑤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회원이 공제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공제회에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하는 손해가 같은 시기에 집중발생 하여 재해사실 확인이 지연 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상하는 손해의 확대

제19조(전기위험 특별담보)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위험 특별담보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는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구내폭발 특별담보) 삭제<2010.12.23.>

제21조(스프링쿨러 특별담보)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스프링쿨러특별담보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또는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와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하며,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쿨러 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스프링쿨러 누수 또는 방수이라 함은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한다.

제22조(소요·노동쟁의 특별담보) ①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노동쟁의특별담보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는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폭발 또는 파열 손해시 1사고당 50만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손해를 보상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회원의 고용인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등록물건에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

제23조(기계위험 특별담보)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기계위험특별담보에 공제가입 한 공제등록물건에 대해서 다음의 각호의 손해를 보상한다.

1.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에 의한 손해
2.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에 의한 손해
3. 회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에 의한 손해
4. 보일러의 급수부족에 의한 손해
5.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손해
6. 단락 등 전기적 현상에 의한 손해
7. 그 밖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손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0.12.23.>
2. 삭제 <2010.12.23.>
3. 삭제 <2010.12.23.>
4. 삭제 <2010.12.23.>
5. 삭제 <2010.12.23.>
6. 삭제 <2010.12.23.>
7. 삭제 <2010.12.23.>
8. 삭제 <2010.12.23.>
9. 삭제 <2010.12.23.>
10.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1.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2.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13. 삭제 <2010.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등록 대상물건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중지, 분해, 임시가동 또는 동일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재조립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벨트, 와이어, 로우프, 체인, 고무타이어, 유리제품, 전기튜브 및 관구, 분쇄용hammer, 여과물질, 전열체, 철망, 대나무제품, 나무제품, 여과망, 노벽, 내화성내장재 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2. 절삭공구, 연마공구 기타 교환 가능한 치구(治具), 공구류 및 금형, 조형 기타 형류
3. 윤활유, 조작유, 연료, 냉매, 촉매, 수처리재료 등 운전에 제공되는 것. 다만, 변압기 또는 개폐기안의 절연유 및 수은정류기 내의 수은은 공제등록물건에 포함 한다.

제24조(신체손해배상 특별담보)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신체손해배상 특별담보에 공제가입한 공제등록건물의 화재·붕괴·폭발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회원의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개정 2021.1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등록대상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또는 회원이 신청한 건물을 등록대상으로 하며, 공제금 신청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동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다.

제24조의2(대물손해배상 특별담보) ①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위탁사업자 등)이 공제등록한 건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책정해놓은 보상한도액내에서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한다.<본조신설 2010. 12. 23., 개정 2021.11.00>

1.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의 공제가입 및 보상 기준 등은 동 관계법령을 적용 <개정 2017.11.30.>
2.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된 일체의 경비 다만,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본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
 - 나.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비용
 - 다.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미리 본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을 때 본회가 회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건물은 제외<개정 2017.11.30.>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원이나 회원의 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5조(종합공제 특별담보) 회원이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손해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손해를 신청한 경우 해당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등록하고 보상한다.

제25조의2(지진위험 부보장 특별담보) 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이 특별담보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1.30.]

제5장 보칙

제26조(손해액의 조정) ①공제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원이 이의를 제기고 공제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공제등록물건은 해당보험사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공제금 부족재원의 충당) ①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공제사업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 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위험의 분산) 공제회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제등록물건에 대해 보험사와 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제29조(적립금구성) 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적립금의 조성은 공제회비, 이식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30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 및 지침으로 따로 정하거나 관련법규 또는 보험약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57호, 1988.8.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별표1> 및 <별표2>는 1988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66호, 1989.12.29.>

이 규정은 1989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74호, 1991.5.1.>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1호, 1992.12.28.>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9호, 1998.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물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8호, 2002.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물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3호, 2004.4.13.>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호, 200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공제등록된 물건은 2008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79호, 2010.12.23.>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31호, 2016.1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46호, 2017.11.3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79호, 2021.12.0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칙

제정 2008.08.26. 개정 2010.12.28.
개정 2012.01.01. 개정 2015.12.22.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21.
개정 2019.12.19. 개정 2020.12.08.
개정 2021.12.10.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사업의 공제회비요율, 공제금산정 및 공제등록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제등록

제2조(등록 및 변경신청 서류) ① 회원은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의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공제등록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 회원은 공제등록물건의 공제회비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의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공제등록리스트
3.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2조의2(공제등록 대상의 범위) ①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2. 건물의 부속물: 칸막이, 정문, 담, 국기게양대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부착물: 건물에 부착된 회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건물의 부속설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TV공시청설비, 피뢰설비, DATA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플로어닥트설비, 주차관제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포함), 자동제어설비, 태양열설비, 히트펌프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②규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설: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업무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집기비품: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소지되는 것으로 사무실, 사업소 및 작업장 등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특정사업장에 고정 설치된 시설물, 기계 및 기구 등 회원이 공제등록 요청하고 공제등록 가능한 물건

③규정 제3조제2항에서 “회원이 신청하고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1. 도로, 교량, 터널, 댐, 해안구조물, 상·하수 처리시설 및 공제회와 협의 된 기타 완성토 목공사물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하는 공유재산

④다음 각호의 물건은 공제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 자전거, 경운기 및 트랙터 등 기동성이 있는 물건
2. 박물관, 전시관 및 미술관 등의 조각품, 진열품 및 전시품
3. 건축물을 제외한 국보, 보물 및 지방문화재 등의 골동품
4. 광물, 식물 및 동물
5.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 및 미술품
6.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및 소프트웨어
7. 기타 공제등록대상으로 부적정한 물건

[본조신설 2020.12.08.]

제3조(공제회비산정 기준) ①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하며, 수시 등록 하는 경우의 공제회비는 일할계산 한다.<개정 2018.12.21>

1. 건물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별표 제1호]에 용도별 공제계수 [별표 제2호]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건물 공제등록금액에 지진위험 공제요율[별표 제10호]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1.01., 2017.12.15., 2019.12.19., 2021.12.10>
2. 시설물(집기비품/기계·설비/공·기구 등)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 [별표 제1호]와 용도별 공제계수 [별표 제2호]및 시설물 옥내·외 공제계수[별표 제3호]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시설물 공제등록금액에 지진위험 공제요율[별표 제10호]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5., 2019.12.19., 2021.12.10>
3.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회비는 공제등록금액에 특별담보 공제요율 [별표 제4호]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25조의2 지진위험 부보장 특별담보는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된 지진위험 공제회비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15., 2019.12.19., 2021.12.10., 2023.12.27.>

②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거부된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기간 중의 공제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 공제회비 산정기준) ①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의 공제회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보상한도액에 따른 인상계수는[별표 제7호]와 같다.

－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회비 = 10,000,000원 × 건물구조별 공제요율 × 보상 한도액인상계수 <개정 2012.01.01.>

② 부지 내 복수의 건물이 존재 하는 경우 화재대물배상특별담보는 각각의 건물별로 공제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피해물건에 대한 배상은 건물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비례하여 공제금을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4조(공제회비 부과기준) ① 동일 주소지에 복수의 건물을 공제등록 하는 경우 주용도의 유지에 필요한 부속건물(기계실, 창고, 관리사무실, 직원숙소 등)은 주용도와 같은 회비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한다. 다만, 동일 주소지라 하더라도 부속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를 회비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구조의 건물은 주구조가 80%이상인 경우 주구조의 요율을 사용하고, 80%미만인 경우 건물구조 중 높은 공제요율을 사용한다.

③ 복합용도의 건물은 사용용도 중 공제요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④ 시설물(집기비품/기계·설비/공·기구 등)은 수용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회비부과 기준으로 하고, 수용건물이 없는 경우 구조는 “그 밖의 구조”로 하고 시설의 사용용도를 공제회비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⑤ 특별담보 중 중합공제담보는 2년 마다 시중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공제회비를 산출 할 수 있다.

⑥ 시설물을 포함하여 건물 1동을 공제등록 1건으로 하여, 특별담보의 공제회비를 포함한 1년 공제회비가 5,000원 이하인 경우 5,000원으로 한다.

⑦ 규정 제4조제1항의 공제등록금액 책정과 관련하여 공제회에서 권고하는 금액은 [별표 제9호]의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제등록 금액 참고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준용하여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0.12.08., 2022.12.29.>

제5조(공제회비의 환불) 공제등록의 해지 및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다만, 공제금을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공제등록물건이 멸실된 경우 공제회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상계) 회원이 공제회비를 납부하기 전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공제금에서 회원이 납부 할 재해복구공제회비를 상계 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제3장 공제금지급

제8조(공제금의 신청) 회원은 공제등록물건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신청서 <별지 3호서식>
2. 재해현장 사진 및 복구를 위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3.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공제회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제9조(중복보상) ①동일한 손해보상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손해원인으로 보상하는 다른 공제계약 또는 보험이 있고 이들의 공제등록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제금을 산정한다.<개정 2020.12.08.>

1. 공제금의 산정 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등록의 공제등록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등록금액의 합계액}}$$

2. 공제금의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등록에 의한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의 합계액}}$$

②하나의 공제등록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등록물건을 계약한 경우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등록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공제금을 계산한다.

제9조의2 삭제<2020.12.08.>

제10조(손해사정위임) ①회원으로부터 사고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여 공제금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1조(대위권) ①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공제금 한도내에서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이 회원이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대위권이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의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이하“대부 받은 자”라고 한다)에 대한 것으로 대부 받은 자가 회원에게 공제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대부 받은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다만, 손해가 대부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2.08.>

제12조(참여기관의 선정 등) ①기관의 선정은 공제사업 개발 참여,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참여기관의 지분은 신용평가등급, 사업안정성,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할 수 있으며,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장

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부 칙<규칙 제161호, 2008. 8. 26>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80호, 2010. 12. 28.>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5호, 2011. 12. 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66호, 2015. 12. 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2호, 2017. 12. 15.>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16호, 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45호, 2019. 12.19. >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0호, 2020.12.08. >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86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17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46호, 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5호] <삭제 2020.12.08.>

[별표 제6호] <삭제 2020.12.08.>

건물 공제등록 참고기준

(단위 : 천원)

건물용도(코드)	층수/면적/용도	A(철콘)	B(조적)	C(기타)	D(목조)
업무시설(A)	16층 이상	2,392	-	-	-
	6층~15층	2,025	1,513	-	-
	그외 경우	1,859	1,521	1,088	1,611
주거시설(B)	16층 이상	1,865	-	-	-
	6층~15층	1,706	1,274	-	-
	그외 경우	1,821	1,791	1,066	1,626
실험연구시설(C)	6층 이상	2,392	1,330	-	-
	그외 경우	1,918	1,330	934	1,381
의료시설(D)	모두	2,465	1,709	1,200	1,775
다중이용시설1(E)	모두	2,196	1,759	1,352	1,803
다중이용시설2(F)	모두	2,196	1,759	1,352	1,803
기숙시설(G)	모두	2,215	1,856	1,253	1,854
체육시설(H)	연면적만 m^2 이상	2,329	-	-	-
	그 외 경우	1,783	1,131	837	967
복지시설(I)	어린이/유아원 용도	2,040	1,572	1,103	1,632
	그외 경우	1,723	1,572	1,103	1,345
정보·통신시설(J)	해당 없음	-	-	-	-
공공시설1(K)	사무실/업무시설용도	1,723	1,572	1,103	1,345
공공시설2(L)	그 외 경우	1,003	897	743	656
공공시설3(M)	모두	1,959	1,701	1,151	4,299
판매시설1(N)	모두	1,996	1,065	1,553	1,097
판매시설2(O)	모두	1,996	1,065	1,553	1,097
근린시설(P)	모두	1,307	763	691	472
제조시설1(Q)	사무실/업무시설용도	1,723	1,572	1,103	1,345
	그외 경우	1,489	1,370	1,098	853
제조시설2(R)	사무실/업무시설용도	1,723	1,572	1,103	1,345
	그외 경우	644	546	475	533
문화시설(S)	화장실/변소용도	1,676	1,545	1,262	1,582
	그 외 경우	1,959	1,865	1,262	3,300
교통시설(T)	주차빌딩용도	739	700		
	그외 경우	999	912	640	780
수련시설(U)	모두	1,849	1,237	844	1,029
발전시설(V)	해당 없음	-	-	-	-
기타시설1(W)	모두	1,196	955	-	-
기타시설2(X))	모두	-	-	743	868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2.15.>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주 소			
구 조		주 용 도		가입기간	20 . . ~ 20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물등록금액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건 축 연 도	
대 지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지 상 / 지 하	/

※ 건물 등록금액 산정기준(해당번호) 표기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감정평가액 ④기타

< 시 설 물 >

번호	시 설 물 명	비고 (수용건물명)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 여부	공 제 등 록 금 액	구 분	등록 여부	공 제 등 록 금 액
신 체 손 해 배 상	가/부	 	화 재 대 물 배 상	가/부	보상한도액 원
소 요 및 노 동 쟁 의	가/부	 	종 합 공 제	가/부	
전 기 위 험	가/부	원	지 진 부 담 보	가/부	
기 계 위 험	가/부	원	공 제 등 록 대 상		
스 프 링 클 러	가/부	원			

상기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특별담보는 공제등록을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엔 <별지 제1호-1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1 서식>

시설물 공제등록 신청서

(단위:원)

번호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주소	규격	수량	제작회사 명	구입년도	소재지 구분 (옥내/옥외)	등록 금액

주) 1. 소재지구분란은 옥내→1, 옥외→2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2.15.>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前	주 소	前					
	後		後					
구 조	前	주 용 도	前	가입기간	前	20 . . . ~ 20 . . .		
	後		後		後	20 . . . ~ 20 .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 물 등 록 금 액	前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前		건 축 연 도	前	
	後 원			後			後	
대 지 면 적	前 m²	건 축 면 적	前 m²	연 면 적	前 m²	지 상 / 지 하	前 /	
	後 m²		後 m²		後 m²		後 /	

※ 건물 등록금액 산정기준(해당번호) 표기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감정평가액 ④기타

< 시 설 물 >

구분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前								
後								
前								
後								
前								
後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 록 여 부	공 제 등 록 금 액	구 분	등 록 여 부	공 제 등 록 금 액
신 체 손 해 배 상	前 가/부	X	화 재 대 물 배 상	前 가/부	보상한도액 원
	後 가/부			後 가/부	
소 요 및 노 동 쟁 의	前 가/부	X	종 합 공 제	前 가/부	X
	後 가/부			後 가/부	
전 기 위 험	前 가/부	원	지 진 부 담 보	前 가/부	
	後 가/부			後 가/부	
기 계 위 험	前 가/부	원	공 제 등 록 대 상	前	
	後 가/부			後	
스 프 링 클 러	前 가/부	원		前	
	後 가/부			後	

상기와 같이 변경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공제등록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공제등록리스트에 적색으로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금 지급신청서

■ 공제등록현황

회원명		공제등록번호	
건물명		공제등록기간	
소재지			

■ 사고내용 및 손해내역

사고일시		재해원인	
사고경위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추정손해액	원	신청기관명	
업무담당자		연락처(유선)	
		연락처(휴대전화)	

■ 공제금 수령계좌(통장사본 첨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의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상기 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만일, 공제금 신청서류를 허위 작성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공제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규칙

제정 1991.04.01. 개정 1992.12.28.
개정 1998.03.11. 개정 1998.11.11.
개정 2003.05.15. 개정 2004.04.19.
개정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26조제2항](#) 및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5., 2004.4.19., [2022.12.29.](#)>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재해복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원과 본회 사이에 이견 또는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조정한다.<개정 2003.5.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9.](#)>

②위원장은 공제회의 공제사업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22.12.29.](#)>

③위촉위원은 시·도지부의 간사 중 1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 또는 재난보험 담당 중 1인, 재해발생물건 관련 전문가 또는 손해보험관계자 중 4인으로 하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4.19., [2022.12.2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2.12.29.](#)>

1.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공제회 「직제규정」에 따라 재해복구공제 공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신설 [2022.12.29.](#)>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은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기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위원장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5.15.>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5.15., 2022.12.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03.5.15.>

③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5.15.>

④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개최안을 상정하고 참여구성원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건의 주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⑤간사는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2.12.29.>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거쳐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7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5.15., 2022.12.29.>

부 칙<규칙 제36호, 199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8호, 2003.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3호, 200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13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